2020 제 4 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맞춤형 법제정보

일 본 제품안전법제
미 국 표시·광고법제
중 국 기업활력법제

외국법제동향

대 만 「국민법관법」
호 주 「현금사용제한법」
미 국 「로비스트법」
일 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법제
일 본 학교복합화 시설법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KLRI

일본의 학교복합화 시설 관련 법제 주요 내용

박재훈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1]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2]를 선정함으로써, 향후 3년간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3]

1 종래의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556(2020. 08. 18. 최종 방문).

2 생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안) 추진체계[2020-2022]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	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① 공공 체육 기반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②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③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④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 체계)
	⑤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⑥ 공공의료시설 확충 (지역 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⑦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⑧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숲, 휴양림, 야영장)

국무조정실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추진단, "생활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안) [2020~2022]", 2019. 04. 15., 6면.

3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0006 (2020. 08. 18 최종 방문).

이와 같이 정부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을 계기로 그동안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 투자에 의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생활 접근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활용과 관련하여,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협업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4)]

그러나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일반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로서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학교 교직원이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교육활동 및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5)] 따라서 정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의 활용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월 3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학교복합시설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21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서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6)]

그러나 이 법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학교복합화시설의 형태에 따른 위탁절차와 시설운영업자의 선정 및 시설별 관리 주체가 다를 경우 다양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 10분 안에 만나는 품격있는 우리동네", 2019. 4. 15., 6면 이하 참조.; 교육부, 생활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학교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2020. 4., 2면.

5 국무조정실 생활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추진단, "생활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안(안) [2020~2022]", 2019. 04. 15, 38면.; 최병관, "지역교육공동체 중심으로서의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과제", 「건축」 제62권 제1호, 건축학회, 2017. 12., 13면 이하 참조.

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서,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어 공공시설의 통폐합 관리가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과 학교시설을 활용한 복합화시설의 수요를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관리계획[7]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이미 상당한 개발과 연구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방안 수립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과 운영·관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일본에서의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 및 유의사항

1.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 및 유형

일본은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어 공공시설의 통합 관리가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과 학교시설을 활용한 복합화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도 성장기에 정비한 공공시설 등의 노후가 진행되어 시설의 갱신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이에 대한 갱신 수선비용 확보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가정환경의 다양화 등 사회구조와 인구의 구성이 크게 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상황의 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안정된 재정운영을 양립하기 위해 재정운영과 연동하여 각 시설의 갱신·통폐합 등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8] 따라서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는 동일 건물 또는 부지 내에 학교시설과 기타 사회교육시설,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을 서로 밀접하게 기능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게 하며,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공존·융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9]

7 일본은 공공시설의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의 집약 및 복합화를 지원하고 있다., https://www.soumu.go.jp/iken/koushinhiyou.html (2020. 08. 18. 최종 방문).

8 정진주, "학생수 감소 사회현상 및 학교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동향과 일본사례조사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회(통권 61호), 2019, 329면.; 김승제,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 동향 및 실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6권 제2호, 한국교육시설학회, 1999. 6, 87면 이하 참조.

9 이성룡 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1. 10, 77면 이하 참조.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크게 “교육시설계와 복합”, “복지시설계와 복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시설계와 복합은 학교교육시설간 복합, 사회교육시설과 복합, 사회체육시설과의 복합유형이 있고, 복지시설계와 복합은 아동복지시설과 복합, 고령자복지시설과 복합 등이 있다. 이 밖에 지방출장소나 지역활성화센터와 같은 행정기관과의 복합유형들이 있다.[10)]

〈표-1〉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

구 분	복합화 유형	복합시설 종류
교육시설계와 복합	학교교육시설간 복합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교육시설과 복합	• 도서관, 생애학습센터
	사회체육시설과 복합	• 체육관, 무도관, 수영장
복지지설계와 복합	아동복지시설과 복합	• 보육소, 아동관
	고령자복지시설과 복합	• 재택간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특별양호양로원
	기타복지시설과 복합	• 장애자복지시설, 문화홀, 집회장
기타시설과 복합	행정기관 및 기타	• 출장소, 지역활성화센터

※ 자료: 류호섭, “교육시설의 복합화 개념 및 필요성”, 「학교교육시설학회지」, 1999, 67면 참조.

10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검토한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 “생활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학교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2020. 4., 9면 참조.

〈우리나라의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

유 형	복합화 내용
기존학교 활용	• 기존 학교시설내 유휴부지 및 지하공간 등 활용 – 유휴부지 복합시설 활용(이용자 동선 분리) – 운동장 지하공간 주거지주차장 활용 – 수직 또는 수평(수직+수평 포함) 증축
신설학교 활용	• 신도시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학교+복합시설 신축 및 개축
폐교 활용	• 폐교시설을 복합시설로 재활용(리모델링) 등을 활용한 복합시설 증축

2.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유의사항

(1) 시설계획·설계상의 유의사항[11)]

학교복합화시설은 학생 수의 장래 동향이나 교육방법 등의 변화에 대해 예측·분석하는 동시에 지역특성, 입지조건, 기존 학교시설의 활용 등을 토대로 시설의 종류, 규모, 계획, 이용형태, 기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검토가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시설과 복합화하는 다른 공공시설 등은 동일한 법령에서도 각각의 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의 적용 관계를 확인한 이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축기준법」이나 「소방법」 등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공동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령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시설이 다른 공공시설 등과 복합화 된다는 것은 서로 일정한 부지와 공간 등을 상호·공동 이용하는 것이므로 그 계획단계에서 각 시설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시설의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분과 학교 교육에만 이용을 한정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는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시설관리상의 유의사항[12)]

학교복합시설에서는 각 시설 간의 상호·공동이용이 활발해지므로 시설별로 이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장시간 이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관리의 책임에 대해 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각 시설의 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시설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시설의 설치관리가 가능한 관계부처와 조직 및 이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여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시설과 복합화하는 각 시설 간 상호·공동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설치조례나 그 시행규칙 등에서 이용내용과 이용조건에 따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별 관리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사무위임 등의 절차를 거쳐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11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学習環境の向上に資する学校施設の複合化の在り方について”, 平成２７年 １１月, 59項 以下 参照.

12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学習環境の向上に資する学校施設の複合化の在り方について”, 平成２７年 １１月, 61項 以下 参照.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각 시설의 활동이 상호지장이 없고 원활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시설 간 상호·공동이용, 이용 시간대의 조정, 공동이용 부분의 유지관리, 공통사무의 처리 등에 대하여 복합시설 전체적으로 충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각 시설의 책임자, 실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 조직을 설치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 정보·의견 교환, 연락·협의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시설에 공통되는 사무, 구체적으로는 시설·설비의 유지보전, 공기정화·전기 기타 기기설비의 관리운전, 가구, 기타 물품 관리, 시설 사용료의 수용, 시설의 사용신청·접수나 이용 상담에 대한 대응 등을 일원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학교복합화시설에서는 시설별로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고 또한 광열수 등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 요구되므로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 등의 사용량을 시설별로 파악하는 동시에 공기 정화, 조명 등의 건축설비를 구분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13]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는 각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 경비 등의 업무는 필요에 따라 민간기업 등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시설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각 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이용형태에 대응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3)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14]

학교복합화시설에서는 공동이용 부분은 물론 전용부분에 대해서도 상호이용에 의해 아동학생,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건물 각부의 설계에 있어서는 상세한 부분까지 사고 발생 방지 등 그 이용형태에 대응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15]

학교시설과 복합화하는 다른 공공시설 등은 이용자, 이용방법, 이용 시간대 등의 이용형태가 각각 다르므로 방범상의 여러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외부 방문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지 및 건물 내· 외부 전망을 확보하여

13 예를 들면, 각 시설의 전용부분 및 공동이용 부분에 대하여 각각 따로 배선, 배관 등을 설치한다. 그리고 전력량계, 양수기, 과금 장치 등의 계량기기를 시설별로 설치한다.

14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学習環境の向上に資する学校施設の複合化の在り方について”, 平成２７年 １１月, 63項 以下 参照.

15 예를 들면, 차량 출입이 많은 경우, 학생과 차량이 접촉하지 않도록 사람과 차량의 부지 내 출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노인데이서비스센터와 같이 차량으로 픽업이 가능한 시설은 이용자의 탑승 시간과 학생의 등하교 시간을 늦추도록 조정하다. 그리고 건물 내에서의 아동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동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를 마련한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식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지나 건물 등 어느 범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영역성에 유의하여 시설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16)]

학교복합화시설은 학생, 지역주민 등이 다양하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부지와 다수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공간을 갖는 등의 이유로 지역의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진, 화재, 풍수해 등의 재해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학교복합화시설은 시설 전체의 방범체계 확립과 지진, 화재, 기타 재해 발생 시 종합적인 대응으로 한층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16 예를 들면, 시설 출입구 주변에 접수나 CCTV 등을 설치하여 외래자 등의 출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기계설비에 의한 방범시스템을 도입하여 창문 등의 상태 감시·잠금 상태 등을 관리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에 유리창을 설치하여 밀폐성을 배제한다.

Ⅲ.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한 주요 법제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한 주요 법제로는 「학교교육법」, 「지방 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 「도서관법」, 「스포츠기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지방자치법」 등 여러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17] 주요 법제별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18] (발췌)

〈표-2〉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주요 내용

법규명	조 문	내 용
「학교교육법」	제2조	학교는 국가「국립대학법인법(2003년 법률 제112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 및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공공단체 (「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8호)」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립대학법인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및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칭한다.)만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학교의 설치자는 그 설치하는 학교를 관리하고,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학교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29조	초등학교는 심신의 발달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일반교육 중 기초적인 것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시정촌은 그 구역 내에 있는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 위해 필요한 초등학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	중학교는 초등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서 심신의 발달에 따라 의무교육으로서 실시되는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7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에는 사회교육에 관한 시설을 부설하거나 학교시설을 사회교육 기타 공공을 위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7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법규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에 규정」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18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026#4 (2020. 08. 22. 최종 방문).

2.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

〈표-3〉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법규명	조 문	내 용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교육위원회의 직무권한)	교육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사무에 다음의 것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 제1항: 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제30조에 규정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하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관리 및 폐지에 관한 것 • 제2항: 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용으로 제공하는 재산(이하 '교육재산'이라고 한다.)의 관리에 관한 것 • 제7항: 교사, 기타 시설과 교구, 기타 설비 정비에 관한 것

3. 「사회교육법(1949년 법률 제207호)」[20)] (발췌)

〈표-4〉 「사회교육법(1949년 법률 제207호)」 주요 내용

법규명	조 문	내 용
「사회교육법」	제20조 (목적)	공민관은 시정촌, 기타 일정구역 내의 주민을 위하여 실제생활에 맞는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교양향상, 건강증진, 정서순화를 도모하고 생활문화의 진흥,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공민관 설치자)	• 제1항: 공민관은 시정촌이 설치한다. • 제2항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민관은 공민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하 본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 • 제3항: 공민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민관에 분관을 둘 수 있다.

19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1AC0000000162 (2020. 08. 22. 최종 방문).

20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4AC0000000207 (2020. 08. 24. 최종 방문).

4. 「스포츠기본법(2011년 법률 제78호)」[21] (발췌)

〈표-5〉 「스포츠기본법(2011년 법률 제78호)」 주요 내용

법규명	조 문	내 용
「스포츠기본법」	제12조 (스포츠 시설의 정비 등)	• 제1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민이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스포츠시설('스포츠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스포츠 시설 운용의 개선, 스포츠 시설에 대한 지도자 배치,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 시설을 정비할 경우, 해당 스포츠시설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 등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5.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22] (발췌)

〈표-6〉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 주요 내용

법규명	조 문	내 용
「아동복지법」	제6조의 3	• 제2항: 본 법률에서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사업'은 초등학교에 취학 중인 아동으로 그 보호자가 노동 등으로 인해 주간가정에 있지 않은 자에게 수업종료 후 아동 후생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6항: 이 법률에서 지역육아지원 거점사업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또는 유아 및 그 보호자가 상호 교류를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육아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조언 기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7항: 이 법률에서 '일시 보호사업'은 가정에서 보육(양호 및 교육(제3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만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한 교육을 제외한다.)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것이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된 영아 또는 유아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로 낮에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집(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77호. 이하 「인정 어린이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인정 어린이원을 말하며 보육소인 것을 제외한다. 제24조 제2항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 그 밖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보관, 필요한 보호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https://www.mext.go.jp/a_menu/sports/kihonhou/attach/1307658.htm (2020. 08. 24. 최종 방문).

22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164_20180402_429AC0000000069&openerCode=1 (2020. 08. 26. 최종 방문).

법규명	조 문	내 용
「아동복지법」	제6조의 3	• 제9항: 이 법률에서 '가정보육사업'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1호 「아동육아지원법(2012년 법률 제65호)」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정에서 필요한 보육을 받기가 곤란한 영아 또는 유아(이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아·유아'라 한다.)로서 만 3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가정적 보육자(시정촌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하는 연수를 수료한 보육사,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로 해당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아·유아의 보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시정촌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택, 기타 장소(해당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아·유아의 주거를 제외한다)에서 가정보육에 따르면 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이용정원이 5명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 제2호: 만 3세 이상의 유아와 관련된 보육 체제의 정비 상황, 기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으로서 만 3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가정보육자의 주거, 기타 장소(해당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주거를 제외)에서 가정보육에 의한 보육을 실시하는 사업 • 제10항: 이 법률에서 '소규모 보육사업'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1호: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아·유아로서 만 3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해당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아·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용정원이 6명 이상 19명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서 보육을 하는 사업 – 제2호: 만 3세 이상의 유아와 관련된 보육체제의 정비 상황, 기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으로서 만 3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서 보육을 하는 사업 • 제12항: 이 법률에서 '사업소 내 보육사업'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1호: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아·유아로서 만 3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시설에서 보육을 하는 사업 * 가. 사업주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감호하는 영아나 유아 및 기타 영아나 유아를 보육하기 위해 스스로 설치하는 시설이나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노동자가 감호하는 영아나 유아 및 기타 영아나 유아의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 * 나. 사업주 단체가 구성원인 사업주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감호하는 영아나 유아 및 기타 영아나 유아를 보육하기 위해 스스로 설치하는 시설이나 사업주 단체의 위탁을 받아 그 구성원인 사업주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감호하는 영아나 유아 및 기타 영아나 유아의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규명	조 문	내 용
「아동복지법」	제6조의 3	* 다.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1962년 법률 제152호)」의 규정에 기초한 공제조합 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다목에서 '공제조합 등')이 해당 공제조합 등의 구성원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다목에서 '공제조합 등의 구성원')이 감호하는 영아나 유아 및 기타 영아나 유아를 보육하기 위해 스스로 설치하는 시설이나 공제조합 등의 위탁을 받아 해당 공제조합 등의 구성원이 감호하는 영아나 유아 및 기타 영아나 유아의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 – 제2호: 만 3세 이상의 유아와 관련된 보육 체제의 정비 상황, 기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으로서 만 3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서 보육을 하는 사업
	제7조	이 법률에서 '아동복지시설'이란 조산시설, 영아원, 모자생활지원시설, 어린이집,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아동후생시설, 아동양호시설, 장애아입소시설, 아동발달지원센터,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센터 및 아동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의 8	• 제1항: 시정촌은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항: 국가, 도도부현 및 시읍면 이외의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정촌에게 신고하여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의 8의 2	• 제1항: 시정촌은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2항: 시정촌이 전항의 조례를 정할 때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수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 제3항:.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 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의 15	• 제1항: 시정촌은 가정보육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항: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 이외의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의 인가를 얻어 가정보육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의 16	• 제1항: 시정촌은 가정보육사업 등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보육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2항: 시정촌이 전항의 조례를 정할 경우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법규명	조 문	내 용
「아동복지법」	제34조의 16	- 제1호: 가정보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수 - 제2호: 가정보육사업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의 적절한 처우 확보와 비밀 유지 및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 제3항: 가정보육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35조	• 제1항: 국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조산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보육소 및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다. • 제2항: 도도부현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 (중략)에서 동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항: 시정촌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항: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 이외의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얻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	아동후생시설은 아동유원, 아동관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그 건강을 증진하거나 정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노인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23] (발췌)

〈표-7〉「노인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주요 내용

법규명	조 문	내 용
「노인복지법」	제5조의 3 (정의)	이 법률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주간돌봄센터, 노인단기입소시설, 노인양호시설, 특별양로원, 경비양로원,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돌봄지원센터를 말한다.
	제15조 (시설의 설치)	• 제1항: 도도부현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항: 국가 및 도도부현 이외의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노인단기입소시설 또는 노인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항: 시정촌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제16조 제2항에 있어 같다.)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 노인양호시설 또는 특별양로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항: 사회복지법인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 노인양호시설 또는 특별양로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호 국가 및 도도부현 이외의 자는 「사회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양로원 또는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의 2의 2 (노인데이 서비스센터)	노인데이서비스센터는 제10조의 4 제1항 제2호의 조치에 관한 자 또는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통소개호에 관한 거택개호서비스비, 치매대응형 통소개호에 관한 지역밀착형 개호서비스비, 개호예방 통소개호에 관한 개호예방서비스비 또는 개호예방 치매대응형 통소개호에 관한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비의 지급과 관련된 자(그 자를 현재 양호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보내 제5조의 2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의 5 (특별양로원)	특별양로원은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조치에 관한 자 또는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지역밀착형 개호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에 관한 지역밀착형 개호서비스비 또는 개호복지시설서비스에 관한 시설 개호서비스비 지급에 관한 자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입소시켜 양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3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8CO0000000247 (2020. 08. 26. 최종 방문).

7. 「신체장애자복지법(1949년 법률 제283호)」[24] (발췌)

〈표-8〉 「신체장애자복지법(1949년 법률 제283호)」 주요 내용

법규명	조 문	내 용
「신체장애자 복지법」	제5조 (시설)	이 법률에서 "신체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시설"이란 신체장애인복지센터, 보장구 제작시설, 안내견 훈련시설 및 시청각장애인 정보제공시설을 말한다.
	제28조 (시설의 설치 등)	• 제1항: 도도부현은 신체장애자 사회참여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항: 시정촌은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 신체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항: 사회복지법인, 기타 자는 사회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항: 신체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시설에는 신체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시설(이하 '양성시설'이라 한다.)을 부설할 수 있다. 단, 시정촌이 이를 부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신체 장애인 복지센터)	신체장애인복지센터는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신체장애인에 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신체장애인에게 기능훈련, 교양향상, 사회와의 교류촉진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한다.

24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4AC1000000283 (2020. 08. 28. 최종 방문).

8.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25] (발췌)

〈표-9〉「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주요 내용

법규명	조 문	내 용
「지방자치법」	제155조	• 제1항: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필요한 곳에 도도부현의 경우에는 지청(도의 경우에는 지청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에 같다.) 및 지방사무소, 시정촌의 경우에는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2항: 지청이나 지방사무소나 지소나 출장소의 위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제3항: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지청이나 지방사무소나 지소나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이를 준용한다.
	제238조 (공유재산의 범위 및 분류)	• 제1항: 이 법률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중 다음과 같은 것(기금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1호: 부동산 • 제3항: 공유재산은 이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한다. • 제4항: 행정재산이란 보통지방공공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보통재산이란 행정재산 이외의 일체의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38조의4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제1항: 행정재산은 다음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대부, 교환, 매각, 양여,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제2항: 행정재산은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는 그 용도 또는 목적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대부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호: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행정재산인 토지상에 「정령」으로 정하는 견고한 건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해당 행정재산인 토지의 공용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경우(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에서 그 자(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가 해당 행정재산의 적정한 방법에 따른 관리를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할 때 – 제2호 보통지방공공단체가 국가, 다른 지방공공단체나 「정령」에서 정한 법인과 행정재산인 토지 위에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25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067 (2020. 09. 04. 최종 방문).

법규명	조 문	내 용
「지방자치법」	제238조의4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제3호: 보통지방공공단체가 행정재산인 토지 및 그 인접지 위에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와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기 위해 그 자(해당 건물 중 행정재산인 부분을 관리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가 해당 행정재산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함)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제4호: 행정재산 중 청사나 기타 건물과 그 부대시설 및 이들 부지(이하 본 호에서 '청사 등')에 대해 바닥 면적이나 부지에 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해당 청사 등을 관리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가 해당 청사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함)에 해당 여유가 있는 부분을 대부할 때(전 3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항: 전항 제2호에 열거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자가 해당 토지 위에 소유한 한 동의 건물 일부(이하 본 항 및 다음 항에서 "특정시설"이라 한다)를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특정시설을 양도하려는 자(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가 해당 행정재산의 적정한 방법에 의한다. 관리를 하는데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대부할 수 있다. • 제4항: 전항의 규정은 동항(본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인 토지 대부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특정시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7항: 행정재산은 용도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8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차지차가법(1991년 법률 제90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4조 (공공시설)	• 제1항: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를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항: 보통지방공공단체(다음 조 제3항에 규정된 지정관리자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제3항: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제244조의 2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폐지)	• 제1항: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이를 정해야 한다.

법규명	조 문	내 용
「지방자치법」	제244조의 2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폐지)	• 제3항: 보통지방공공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로서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하는 것(이하 본 조 및 제244조의4에서 '지정관리자'라 한다)에게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4항: 전항의 조례에는 지정관리자의 지정절차, 지정관리자가 수행하는 관리기준과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5항: 지정관리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 제6항: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지정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항: 지정관리자는 매년도 종료 후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업무에 관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항: 보통 지방공공단체는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관리자에게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요금(다음 항에서 '이용요금'이라 한다)을 해당 지정관리자의 수입으로서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9항: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용 요금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 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관리자가 정한다. 이 경우에 지정관리자는 사전에 해당 이용요금에 대해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항: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장이나 위원회는 지정관리자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지정관리자에게 해당 관리 업무나 경리 상황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실지에 대해 조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제11항: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지정관리자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기타 해당 지정관리자에 의한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Ⅳ. 시사점

일본은 1980년부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에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처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교육체제의 거시적, 미시적 측면의 상호 연계에 중점을 두고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회교육, 사회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 고령자 사회로 인한 복지시설의 증대"라는 사회적 요인을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실시하여 교육개혁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 일본에서는 학교시설의 고기능화·다기능화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 중에 있다.[26)]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생활밀착형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접근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협업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한 주요 법제와 사례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복합화 모델과 운영·관리방안 등의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복합화시설은 대부분 체육시설, 문화센터, 도서실 등 평생학습 관련 시설과 주거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과 주로 복합화 되고 있는 경향이 많다. 반면에 일본은 평생학습 관련 시설 외에도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문화센터, 양로원 등의 시설과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과 복합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시설 복합화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장래 학생 수의 동향이나 교육방법 등의 변화 등에 대해 예측·분석하는 동시에 지역특성, 입지조건, 기존 학교시설의 활용 등을 토대로 시설의 종류, 규모, 계획, 이용형태, 기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당국, 학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시설 복합화의 근본적인 취지는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중심센터 역할을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 시설의 공동이용 및 전용부분의 복합화시설이 주변의 유사시설 또는 이미

26 https://www.mlit.go.jp/toshi/city_plan/content/001353760.pdf (2020. 09. 04. 최종 방문).

추진중인 사업과 상충되지 않고,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리한 이용료로 시설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학교복합시설법」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7] 따라서 조례 제정 시, 학교장의 책임과중 및 시설개방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 각 시설별 관리·운영 주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운영단계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일본은 학교복합시설의 상호·공동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설의 설치조례나 그 시행규칙 등에서 이용내용과 이용조건 및 시설별 관리역할 분담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사무 위임 등의 절차를 거쳐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복합시설법」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28]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성질, 재산의 무상사용 범위, 유상사용 시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위탁절차, 관련 법규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27 「학교복합시설법」 제7조 제1항·2항 참조.

28 「학교복합시설법」 제6조 제3항·제4항 참조.

참고문헌

- 교육부, “생활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학교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2020. 4.
- 국무조정실 생활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추진단, “생활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컨퍼런스”, 2019. 12.
- 국무조정실 생활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추진단, “생활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안) [2020~2022]”, 2019. 4.
- 김승제,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 동향 및 실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6권 제2호, 한국교육시설학회, 1999. 6.
- 이성룡 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1. 10.
- 정진주, “학생수 감소 사회현상 및 학교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동향과 일본사례조사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회(통권61호), 2019. 11.
- 최병관, “지역교육공동체 중심으로서의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과제”, 건축 제62권 제1호, 건축학회, 2017. 12.
- 文部省, “学校開放のための施設・環境づくり”, 1995.
- 学校施設の複合化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学校施設の複合化について”, 1991.
-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学校施設の老朽化対策について～学校施設における 長寿命化の推進~”, 2013.
- 学校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学習環境の向上に資する学校施設の複合化の在り方について”, 2015.
- https://elaws.e-gov.go.jp.
- https://www.soumu.go.jp.
- https://www.mlit.go.jp.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좌측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하기 GO"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TEL. (044) 861-0482
FAX. (044) 868-9919
E-Mail. 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ISSN 1976-0760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 구 플 랫 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0년 10월 15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